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1990. 8. 1 법률 제4492호로 제정 공포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2조 법제상의 조치에의거 고성군환경기본조례안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보전의 목적,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를 하였고, 고성군, 사업자, 군민의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와 고성군은 타기관 및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 내용으로 환경정책기본법 등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 질의 : 환경백서를 환경변화 요인이 없어도 2년만에 꼭 발행해야하며 환경백서 발행에 인적, 물적, 자금 등이 많이 투자되어야 하는데 얼마나 예상하는가
- 답변 : 중앙이나 도에서 환경백서를 매년 발간한다고 하였으나 본 군에서 환경변화 요인이 적을 것이 예상되어 2년에 1번 발행기로 했으며,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은 예상하고 있음.
- 질의 : 군민, 사업자 등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시설의 설치, 운영, 조사, 연구비를 지급한다고 하며 환경단체 운영에까지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야 하고 환경기금도 조성해야 하는데 군내 등록된 환경단체가 몇개이며 어떻게 재정지원을 할 것인가
- 답변 : 등록도 환경단체는 없으며, 조례로 별도로 정하여 재정 지원할 것입니다.
- 질의 : 환경보전기금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답변 : 본 조례 제정후 별도 조례로 정하여 조성할 것입니다.

5. 토론

- 조례의 기본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한 선언적, 포괄적 규정이 많으며 제9조(환경영향 검토),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 관리 등), 제13조(자연환경의 보존) 제3항에서 군의 의무를 규정하면서 각 조항이 모두 강행 규정으로 "강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제4조(군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 군, 사업자, 군민의 공통의무를 제13조제1항에 규정하고 제2항은 법시행 주체의 규정이 없고 제3항은 군의 의무 규정을 규정하는 등 여러조항에 군의 의무를 분산하였으며, 고성군 환경기본조례는 전체적으로 환경친화적 행정실현을 위한 조례로서 조례의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고 포괄적 규정을 두어 시행의 모호성이 있고 강행규정과 과잉 의무규정을 들이면서 불필요한 제정과 인력의 소모가 예상되므로 토론결과 고성군환경기본법은 부결시키기로함.

6. 심사결과 : 1997. 6. 16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부결